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25일, 권향엽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5.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5.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5.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권향엽의원)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현행법에 산업위기지역 지원사항은 열거되어 있으나 관계부처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고, 산업위기지역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가. 용어 정의 및 지원 확대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시 판단의 대상이 되는 ‘주된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두 지역을 포괄하는 ‘산업위기지역’을 새로이 정의함(안 제2조).

또한, 현행 제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만 제공되어 온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 활동, 지역산업 컨설팅 지원 등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4장),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의 자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u>산업</u> 으로서	1. ----- ----- <u>산업이자</u> -----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
급효과가 큰 산업을 말한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
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
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
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
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
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
역을 말한다.

3. (생 략)

<신 설>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
업”이라 한다)이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
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
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산업으로서 산업통상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적인
기준을 충족한 산업을-----.

2. -----

-----제8조의2에-----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위기지역”이란 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을 통칭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
-----산업위기지역에-----

-----대통령령으로-----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2. (생략)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신설>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

⑤ (현행과 같음)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금 지원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금 지원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정책 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의 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
-----산업위
기지역-----

-----.

② -----산업위
기지역-----

-----.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
-----산업위지역-----

-----.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
-----산업위지역-----

-----.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① --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u>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u>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3. (생략) ② ③ (생략)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u>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 1. <u>산업위기지역</u>----- ----- --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 -----<u>산업위기지역</u>에서----- ----- -----.
---	---

현행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9조제1항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구체적인 신청 요건으로, ① 주된 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으면서, ② 해당 산업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로서, ③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고 ④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것을 모두 요구하고 있음.¹⁾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²⁾는 각 신청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1)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대상 지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에 관한 자체 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일 것**
2.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일 것**
3. 신청대상 지역의 휴업·폐업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4.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2항제1호: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가 낮고, 주된 산업 종사자 수 비중과 지역 내 특화도가 높은 경우일 것
2. 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된 산업의 고용 또는 사업장 수가 감소하고, 주된 산업의 생산지표가 악화된 경우일 것
3. 법 제9조제2항제3호: 해당 지역의 전체 고용, 전력 사용량, 상권 휴업·폐업 등 지역경제 지표가 악화된 경우일 것
4. 법 제9조제2항제4호: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주된 산업과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특히 이 중 지역경제의 현저한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 하여서는 “해당 지역의 전체 고용, 전력 사용량, 상권 휴업·폐업 등 지역경제 지표가 악화된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주된 산업의 침체가 실물 지표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해 현행법 제8조³⁾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지역산업 악화 및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지원 제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 재해·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등이 발생한 경우, 지역 내 주요 기업 및 사업체의 이전 계획, 구조조정 계획, 폐쇄 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할 때 신청할 수

-
- 3)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규모 재해·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④ < 생략 >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있도록 하고 있음. 즉, 복수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비해 비교적 신청 요건이 완화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4장(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은 지원대상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명시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지원사업 간의 연계, 국유·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 산업집적법상 특례 및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함에 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는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지원,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이 현행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제공되는 것에 그치고 있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사항

- ▶ (제15조) 설비투자, 공장 신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자금 지원 또는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 ▶ (제16조)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 (제17조) 근로자, 퇴직자 등 대상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 실시할 수 있다.
- ▶ (제18조)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19조) 컨설팅 서비스 제공, 융자·보조 등 연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외에, 지원사업의 연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법 제22조), 산업집적법 특례(법 제23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자료: 산업통상부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전환된 사례는 전무하며, 2025년 말 기준 4개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만이 지정, 고시되어 있는 상황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현황 (2025년 말 기준)

<u>구분</u>	<u>지역</u>	<u>지정기간</u>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전남 여수	‘25.05.01~’27.04.30.
	충남 서산	‘25.8.28.~’27.8.27.
	경북 포항	‘25.8.28.~’27.8.27.
	전남 광양	‘25.11.20.~’27.11.19.

자료: 산업통상부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산업위기지역’을 새로이 정의하고, 현행 법 제4장의 지원사업 범위를 산업위기지역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한편, 특별회계 및 기금, 그 외 자금의 사용하여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과 같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시 고려 대상이 되는 ‘주된 산업’의 세부적인 기준을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할 경우, 주된 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산업위기지역으로의 지정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산업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적시에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여 위기 확산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하여 대규모 휴·폐업 및 실직 등 지역 경제에 현저한 타격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사후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두 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개정안과 같이 통합적으로 규정하게 될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도 위기상황의 경중에 따라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으나, 그와 동시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간 차별화된 운용을 통한 효과적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정책 취지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개정안 제15조는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제2항제2호)를 사용하여 자금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② 「산업발전법」 제33조⁴⁾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제6항)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제2항⁵⁾에 따른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

4) 「산업발전법」

제33조(사업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1.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2. 입지·물류·유통·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4. 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5.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6. 자전거·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행 등의 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해당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발전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개별 지역의 경기침체 우려 및 주된 산업의 악화에 대하여 응하여 위기확산 예방 및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과 지원의 취지 및 목적을 달리한다는 특징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일부 자금 지원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주체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응답 및 협조 의무가 별도로 개정안 문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자금지원 결정에 대한 재량은 여전히 기금의 관리주체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있게 되므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효과는 미미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③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뿐만 아니라, 안 제15조제7항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제2항6)에 따른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의 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제7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이 판단하여, 해당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7)는 산업 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기업을 주무부처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위기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

대응특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나 심의위원회 승인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하여 다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절차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 지원에 대한 별도의 요청 권한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자금을 통해 위기지역 소재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문언에 따를 경우 시중은행 자금에 대한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 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한 재량 부여 등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 시 선제대응 지역계획의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의무를 명시하고(안 제8조제3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요건에 대한 위임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산업통상부장관의 판단재량에 위임하며(안 제8조의2제2항제4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② (생략)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선제대응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제>

	<u>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 <u>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u> <u>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u> <u>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u> <u>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u> <u>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u> <u>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u> <u>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u> <u>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u>
--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책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먼저 현행법 제9조제4항⁸⁾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전 시·도지사로 하여금 산업위기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개정안 제8조제3항은 현행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계획에 대해서도 동일한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의무를 시·도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두 제도 간 정합성 정비를 통해 법적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⁹⁾

8)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위기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8조의2제4항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 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제10조제4항¹⁰⁾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련 시책 수립 의무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조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련 시책 수립의 공동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소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만을 시책 수립의 주체로 명시하는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시책 수립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현행법 제8조제4항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시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 및 이행가능성 외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

9)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의 공고 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선제적 조치의 신속성을 고려할 때 별도 공고 절차 없이 현행처럼 진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0)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개정안 제8조의2제2항제4호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시 산업통상부장관의 검토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대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업통상부장관에 대하여 판단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 제8조의2제2항 각 호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 및 기준을 나열한 것으로, 실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과정에서는 지자체, 지역 산업 내 기업, 관계부처 간 지정 여부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준을 산업통상부장관 단독의 판단 재량에 위임하기보다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시¹¹⁾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으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11)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대상 지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에 관한 자체 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전환 절차 신설

개정안은 현행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대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또한,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권을 폐지하는 대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시·도지사도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 경제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특별지역계획-----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대상 지역	<삭 제>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	<삭 제>

요성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산업 위기 대응에 관한 자체 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위기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삭제>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청 절차에-----산업통상부장관에게-----

-----, 이 경우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특별
지역계획-----

-----.

⑤ -----

-----특별
지역계획-----
-----.

다.	
⑥ 그 밖에 <u>산업위기지역계획</u> 의 수립·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신청대상 지역의 범위, 공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u>특별지역계획</u> ----- ----- ----- -----.
제11조(<u>산업위기지역계획</u> 의 변경)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는 <u>산업위기지역계획</u> 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u>산업위기지역계획</u> 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u>특별지역계획</u> 의 변경) ① ---- ----- ----- <u>특별지역계획</u> ----- ----- <u>특별지역계획</u> -----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u>산업위기지역계획</u> 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 ----- ----- <u>특별지역계획</u> ----- -----. ----- -----.
③ 그 밖에 <u>산업위기지역계획</u> 의 변경승인 요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u>특별지역계획</u> ----- ----- -----.

현행법 제9조제2항 각 호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으로, ① 주된 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으면서, ② 해당 산업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로서, ③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고 ④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것을 모두 요구하고 있음.¹²⁾

12)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주된 산업에 가해진 충격이 심각한 경우에는 산업활동의 침체를 완화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기반의 소실 등 지역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충격의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전이될 때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시 요건으로 주된 산업과 지역경제의 동시 침체를 요구하고 있어 신속한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신청 요건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대상 지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에 관한 자체 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일 것**
2.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일 것**
3. 신청대상 지역의 휴업·폐업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4.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 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명시함으로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추가로, 개정안은 앞서 정의 조항에서 ‘산업위기지역’ 용어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지칭하는 축약어로 사용하였던 ‘산업위기지역계획’을 ‘특별지역계획’으로 변경·사용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경우 현행 시·도지사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없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없게 됨.

조문	내용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등)	·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시 산업위기지역계획 수립·제출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 정량지표> 1.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 2.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조문	내용
	3. 신청대상 지역의 휴업·폐업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 신청 가능 지역 : 정성지표>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에 따라 예외적인 신청 가능 지역으로 허용하였던 고용위기 발생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청권이 제약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³⁾

한편, 산업통상부는 안 제11조에 대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의 변경 시에도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악화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의 시급성이 요구되며, 현행법상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수정을 통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시에는 절차의 신속 진행 규정¹⁴⁾을 명시적으로 들만

13)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고용위기 발생 지역이 산업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산업위기지역의 지정요건에 따라 지정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지정요건이 상이한 고용위기 발생 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다고 설명하였음.

14)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및 제8조 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

큼 상대적으로 계획 수립의 탄력성 및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지정기간 만료 후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및 위임사항 정비 등

개정안은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안 제10조제4항 후단 및 제20조의2 신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회복이 더딘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7항).

추가로, 현행법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시 검토하여야 할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각각 부령으로 위임하거나(안 제10조제2항제4호) 별도의 위임 없이 시·도지사의 판단 재량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

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산업위기지역계획</u> 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 ----- ----- ----- ----- ~~특별지역계획~~ 을-----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산업위기지역계획</u> 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3. <u>특별지역계획</u> 이----- -----
4. 그 밖에 <u>해당</u>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사항	4. -----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u> ----- ----- -----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u>필요한</u>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u> -----

⑤·⑥ (생략)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지정기간이 연장된 이후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⑧·⑨ (생략)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책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다만, 이 경우에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부터 5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

⑧·⑨ (현행과 같음)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

-.

1. · 2. (생략) 3.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u>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② ~ ④ (생략)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3. ----- ----- -----<u>경우</u>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20조의2(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책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u>
--	--

먼저, 개정안과 같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수립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시책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10조제4항 후단)하고,

산업위기지역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협조 및 지원 요청에 따른 의무를 부과 (안 제20조의2)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지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0조제4항은 산업통상부장관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주체로 명시하여 부처 간 시책의 공동 수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책의 수립 주체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별도로 시책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현행과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안 제20조의2제2항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련된 관리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현행법과 개정안에 모두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10조제7항과 관련하여,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기간 만료 시점에 산업활동 및 지역경제의 침체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지정기간을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0조제6항)¹⁵⁾.

이때, 현행법 제10조제7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¹⁶⁾

주된 산업의 상당한 회복의 영향이 아직 지역경제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타 산업 및 지역 전반의 지원을 위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정기간의 만료 시 지원사업의 급작스러운 단절로 인해

15)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6)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복탄력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역에 대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지역경제의 침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된 산업의 완만한 회복세로 인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만료된 경우에도 지역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마. 인용조문 정비 등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산업위기 예방조치 수립 및 이행 권고를 위한 요건으로 “주된 산업”의 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안 제7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지정 신청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지원 시책 수립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편(안 13조), 주요 용어(산업위기지역, 특별지역계획 등) 수정에 따른 인용 사항을 정비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u>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u> 등의 지정 등	제3장 <u>산업위기지역</u> 등의 지정 등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u>산업활동이</u>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 ----- ----- ----- <u>주된 산업의 활동이</u>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긴급지원) 국가는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제13조(긴급지원) ----- -----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37 –

로 우려되는 경우”에서 ‘산업활동’을 ‘주된 산업의 활동’으로 적시함으로써, 침체 대상 산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산업통상부는 현행법 제13조 본문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시 고려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이 문언상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 후단은 지원 시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적인 운용에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¹⁷⁾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할 경우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7) 현재 긴급지원의 세부적인 요건은 별도의 법률상 위임 근거 없이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규정되어 있음.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긴급지원의 요건)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일 것
2. 법 제9조제2항의 요건 충족이 명백한 경우일 것
3.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것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성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전환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후속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등).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 전 시·도지사의 선제대응지역계획 공고 및 주민 의견 청취 의무 등을 현행대로 하고, 시중은행 자금의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를 감안하여 협조 요청의 대상을 조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도 하여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 전 관련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현행대로 규정함(안 제8조제3항 삭제).

나.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후단 삭제).

다.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의 자금지원 관련 협조요청 대상을 해당 자금의 관리주체로 명시함(안 제15조제7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8조의2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산업통상부장관
이”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산업통상부장관
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안 제13조 전단 중 “경우로써”를 “경우로서”로 한다.

안 제15조제7항 중 “그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
으로부터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해당 자금의 관리주체에게”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산업위기선제대 응지역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제8조(산업위기선제대 응지역의 지정 신 청 등) ① · ② (현 행과 같음)	제8조(산업위기선제대 응지역의 지정 신 청 등) ① · ② (개 정안과 같음)
③ 산업통상부장관 은 산업위기선제대 응지역의 지정 신 청을 받은 경우에 는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해당 지역 을 산업위기선제대 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u>제1항에 따라 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의 지정을 신청하 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선제 대응지역계획을 2 0일 이상 공고하 고, 해당 지역의 주민·기업·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	<삭 제>
<신 설>	제8조의2(산업위기선 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8조에 따 라 산업위기선제대 응지역의 지정 신	제8조의2(산업위기선 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청을 받은 경우에는
는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해당 지역
을 산업위기선제대
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_____

— — — •

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선제대응지역계 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 부

4. 그 밖에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② _____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산업통
상부장관이-----

	<u>해당 지역에 대한</u>	-----
	<u>산업위기선제대응</u>	-----
	<u>지역 지정의 필요</u>	-----
	<u>성을 판단하기 위</u>	-----
	<u>하여 필요하다고</u>	-----
	<u>인정하는 사항</u>	-----
	③ <u>국가와 지방자</u>	③ ~ ⑤ (개정안과
	<u>치단체는 산업위기</u>	같음)
	<u>선제대응지역의 주</u>	
	<u>된 산업에 대하여</u>	
	<u>다음 각 호의 지원</u>	
	<u>을 할 수 있다.</u>	
	1. <u>자금·융자 등</u>	
	<u>금융·재정 지원</u>	
	2. <u>연구개발 지원</u>	
	<u>및 성과사업화</u>	
	<u>지원</u>	
	3. <u>국내 판매, 수출</u>	
	<u>지원과 경영·기</u>	
	<u>술·회계 관련</u>	
	<u>자문</u>	
	4. <u>재직근로자의 교</u>	
	<u>육훈련 및 실직</u>	
	<u>자·퇴직자의 재</u>	
	<u>취업교육 등 고</u>	
	<u>용안정 지원</u>	

5. 그 밖에 산업위
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④ 산업통상부장관
은 필요한 경우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
복을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수립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책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
다.

	⑤ <u>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0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산업위기지역계획을</u>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10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 ----- ----- ----- ----- ----- ----- -----<u>특별지역계획을</u>----- ----- ----- ② ----- ----- ----- ----- -----	제10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3. <u>산업위기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u>	3. <u>특별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u>	
4. 그 밖에 <u>해당 지역</u> 에 대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4. -----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u> ----- ----- ----- ----- -----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	4. ----- <u>산업통상부장관이</u>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u>필요한 시</u>	④ ----- ----- ----- ----- ----- ----- <u>대통령령</u>	④ ----- ----- ----- ----- ----- -----

[illegible]

<u>공장의 신설·증설,</u> <u>경영혁신, 업종전환</u> <u>및 운전자금 확보</u> <u>등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사업을 수 행하는 경우 예산 의 범위에서 자금 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위기지역 기업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의 보 조금 2.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금 또는 자금	----- ----- ----- -----. ② <u>국가 및 지방자</u> <u>치단체는 위기지역</u> <u>기업에 대하여 다</u> <u>음 각 호의 자금을</u> <u>융자 및 보조할 수</u> <u>있다.</u> 1. 「<u>지방자치분권</u> <u>및 지역균형발전</u> <u>에 관한 특별</u> <u>법」 제74조에</u> <u>따른 지역균형발</u> <u>전특별회계의 보</u> <u>조금</u> 2. 「<u>소재·부품·</u> <u>장비산업 경쟁력</u> <u>강화 및 공급망</u> <u>안정화를 위한</u> <u>특별조치법」 제</u>
---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u><신 설></u> 2. <u>대통령령으로 정</u>	<u>68조에 따른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u> 3. <u>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기금 또는 자금</u>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2. 「<u>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u>」 제68조에 따른 <u>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u> 3. <u>대통령령으로 정</u>	
--	--	--

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에 대한 투자
를 촉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
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
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
다.

⑤ (생략)

<신설>

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 대
한 투자를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지역에 투
자하는 기업에 고
용보조금 및 교육
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
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산업통상부장관
은 제1항의 자금
지원이 「산업발전
법」 제33조에 따
라 「중소기업진흥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을 사용하는 사업

[illegible]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업으로서”를 “산업이자”로, “산업을”을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적인 기준을 충족한 산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8조에”를 “제8조의2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위기지역”이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

제4조 중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산업활동이”를 “주된 산업의 활동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등”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책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을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 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산업위기지역계획”을 “특별지역계획”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를 “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청 절차에”로,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대하여”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위기지역계획을”을 “특별지역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위기지역계획에”를 “특별지역계획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위기지역계획의”를 “특별지역계획의”로 한다.

이 경우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위기지역계획을”을 “특별지역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위기지역계획이”를 “특별지역계획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해당”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부터 5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제11조의 제목 중 “산업위기지역계획의”를 “특별지역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위기지역계획을”을 “특별지역계획을”로, “산업위기지역계획의”를 “특별지역계획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산업위기지역계획의”를 각각 “특별지역계획의”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필요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제8조제3항에”를 “제8조의2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선제대응지역계획을”을 “제8조에 따른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로, “산업위기지역계획을”을 “특별지역계획을”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를 “산업위기지역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를 “산업위기지역에”로,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를 각각 “산업위기지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금 지원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를 “산업위기지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를 “산업위기지역에”로 한다.

제17조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한다.

제18조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를 “산업위기지역의”로 한다.

제20조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 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을 “산업위기지역에서”로 한다.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지역의 지정,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u>산업으로서</u>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u>산업을</u> 말한다.	1. ----- ----- <u>산업이자</u> ----- ----- <u>산</u> <u>업으로서</u> <u>산업통상부장관이</u> <u>정하여 고시한 세부적인 기준</u> <u>을 충족한 산업을</u> -----.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u>제8조에</u>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 ----- ----- ----- ----- ----- - <u>제8조의2에</u> ----- -----.
3. (생 략) <u><신 설></u>	3. (현행과 같음) 4. <u>“산업위기지역”이란 산업위</u> <u>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u> <u>응특별지역을</u>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관한 규정과 산업위기선제대
응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
역의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
른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
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
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
다 완화된 규제를 정하는 규
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산
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
하여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
다.

② . ③ (생략)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산업위기지역-----

-----.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

-----주된 산업
의 활동이-----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1.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 ⑥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삭 제>

제8조의2(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교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책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 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

대상 지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의 필요성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에 관한 자체

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생 략)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

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

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특별

지역계획-----

-----산업

위기특별대응지역의 지정을 신

청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

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 신청 절차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 이 경우 주요 산업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u>산업위기지역계획</u>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u>산업위기지역계획</u>에 대한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u>산업위기지역계획</u>의 수립·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신청대상 지역의 범위, 공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	<u>지표가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④ ----- ----- ----- -----<u>특별지역계획을</u>----- ----- ----- -----. ⑤ ----- ----- ----- -----<u>특별지역계획에</u>----- ----- ----- -----. ⑥ -----<u>특별지역계획의</u>----- ----- ----- ----- ----- ----- -----.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 -----
--	--

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산업위기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지역계획을-----

② -----

1.·2. (현행과 같음)

3. 특별지역계획이-----

4.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③ (현행과 같음)

④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⑤·⑥ (생략)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지정기간이 연장된 이후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⑧·⑨ (생략)

제11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는 산업위기지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지
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부터 5년의 기간을 초과
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⑧·⑨ (현행과 같음)

제11조(특별지역계획의 변경) ①

특별지역계획을-----
-----특별지
역계획의-----
-----.

② -----

여 <u>산업위기지역계획의</u>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u>산업위기지역계획</u>의 변경승인 요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2. (생략) 3.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u>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② ~ ④ (생략) 제13조(긴급지원) 국가는 제9조에	--<u>특별지역계획의</u>----- -----. -----. ③ -----<u>특별지역계획의</u>--- ----- -----.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경우</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긴급지원) -----
---	--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신청된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 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경영자금, 고용안정,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지원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산업통
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예방
조치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산
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
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
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
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
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경우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

-----제8조의2제1항에 -----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제8조에 따른 선제대응지역계획을

특별지역계획을

.

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
-----산업위기지역
에-----
-----대통령
령으로-----
-----.

② -----

-----.

1. (현행과 같음)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2. (생략)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⑤ (생략)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위기지역에-----

-----산업위기지역에-----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금 지원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

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산업위기지역에

② 산업위기지역에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산업위기지역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산업위기지역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기지역기업의 경영·기술·재
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
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
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3. (생략)

② · ③ (생략)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
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
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
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
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① -----

-----.

1. 산업위기지역의-----

2.·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
원) -----
산업위기지역에서-----

-----.

제20조의2(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의 협조 등) ① 산업통상부장
관은 산업위기지역의 지정, 관

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